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산림청에 설치한 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월 27일에서 2023년 1월 27일까지 1년 연장하고,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또는 연구사 2명, 연구관 1명) 중 2명(6급 또는 연구사 1명, 연구관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신설한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을 폐지하고, 이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 조정한 산림청의 인력 1명(4급 1명)을 종전의 직급(4·5급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최첨단기술의 산림분야 활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1명을 증원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지방산림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임업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2. 00. ~ 2022.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림분야 기후대응기금 총괄

제7조제3항제19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임업의 협업경영·대리경영의 육성 및 지원

8.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지도 및 감독

제21조제1항 단서 중 “12명”을 “13명”으로, “1명, 행정서기”를 “1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로 한다.

별표 3 중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8”을 “9”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323”을 “324”로 하고, 일반직 계 “318”을 “319”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8”을 “17”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9”를 “20”으로 하며, 전산주사보 “3”을

“4”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8”을 “9”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6 중 임업서기보 “21”을 “22”로 하고, 산림보호운영서기보 “12”를 “11”로 한다.

별표 6의2 중 임업서기보 “21”을 “22”로 하고, 산림보호운영서기보 “12”를 “11”로 한다.

별표 7 중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32”를 “133”으로 하고, 방송통신서기보 “14”를 “15”로 하며, 운전서기보 “29”를 “28”로 하고, 통신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7의2 중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32”를 “133”으로 하고, 방송통신서기보 “14”를 “15”로 하며, 운전서기보 “29”를 “28”로 하고, 통신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10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전산주사보 1명은 2025년 1월 24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10]

산림청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4항 관련)

1. 수목원조성사업단(존속기한: 2023년 1월 27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임업연구사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5조의2(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u>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차장 밑에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을 둔다. ②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산림재해 대응 분야 최첨단 기술 활용 정책의 수립·총괄 2.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불진화 기술의 개발·보급 3.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불진화 기술의 실용화에 관한 사항 4. 산림재해 대응 분야 최첨단 기술 활용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u><삭 제></u>
제7조(산림산업정책국) ① · ② (생 략) ③ 산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제7조(산림산업정책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분장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 16. (생 략)

17.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

회의 육성·지도 및 감독

18. 임업의 협업경영·대리경영

의 육성 및 지원

19. (생 략)

④ ~ ⑥ (생 략)

⑦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신 설>

7. (생 략)

<신 설>

9. ~ 19. (생 략)

⑧·⑨ (생 략)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산림청에 두는 공무원
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
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
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

1. ~ 5. (현행과 같음)

6. 산림분야 기후대응기금 총괄

7. ~ 17. (현행 제6호부터 제16
호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18. (현행 제19호와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5. (현행과 같음)

6. 임업의 협업경영·대리경영
의 육성 및 지원

7. (현행과 같음)

8.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의 육성·지도 및 감독

9. ~ 19. (현행과 같음)

⑧·⑨ (현행과 같음)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 2와 같으며, 별표 3의 2의 정원 중 12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명,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5명,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 13명-----

----- 1
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

--.

②·③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삭 제>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8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
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으로 본
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u>8</u>	<u>9</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3</u>	<u>2</u>		-1	
	.		.		.		
	.		.		.		

[별표 3의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23</u>	<u>324</u>	+1
•	•	•	
•	•	•	
일반직 계	<u>318</u>	<u>319</u>	+1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8</u>	<u>17</u>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u>19</u>	<u>20</u>	+1
•	•	•	
•	•	•	
전산주사보	<u>3</u>	<u>4</u>	+1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u>8</u>	<u>9</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3</u>	<u>2</u>	-1
•	•	•	



[별표 6]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임업서기보			<u>21</u>		<u>22</u>	+1	
		•		•	•		
		•		•	•		
산림보호운영서기보			<u>12</u>		<u>11</u>	-1	
		•		•	•		
		•		•	•		

[별표 6의2]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임업서기보			<u>21</u>		<u>22</u>	+1	
		•		•	•		
		•		•	•		
산림보호운영서기보			<u>12</u>		<u>11</u>	-1	
		•		•	•		
		•		•	•		

[별표 7]

지방산립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u>132</u>	<u>133</u>	+1
•	•	•	
방송통신서기보	<u>14</u>	<u>15</u>	+1
운전서기보	<u>29</u>	<u>28</u>	-1
•	•	•	
•	•	•	
통신운영서기보	<u>2</u>	<u>1</u>	-1
•	•	•	
•	•	•	

[별표 7의2]

지방산립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u>132</u>	<u>133</u>	+1
·	·	·	
방송통신서기보	<u>14</u>	<u>15</u>	+1
운전서기보	<u>29</u>	<u>28</u>	-1
·	·	·	
·	·	·	
통신운영서기보	<u>2</u>	<u>1</u>	-1
·	·	·	
·	·	·	